

의 안 번 호	제 호
의견제시년월일	2020. 11.

의견청취

구미도시관리계획(문화공원)
결정(변경 : 폐지)에 대한 의견청취



구 미 시

구미도시관리계획(문화공원) 결정(변경 : 폐지)에 대한 의견청취

의 번	안 호	
--------	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0.11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새마을운동의 이념을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하여 현재 구축되어있는 전시·체험·교육시설의 성격에 맞도록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해제 반영된(구미시 공고 제2020-1718호, 2020.11.4.) 문화공원(새마을운동테마공원)을 위치·면적·용도지역 등의 변경 없이 현재 상태로 문화시설 및 연구시설로 신규 결정하고자,
- 나. 구미도시관리계획(문화공원) 결정(변경:폐지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함

2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변경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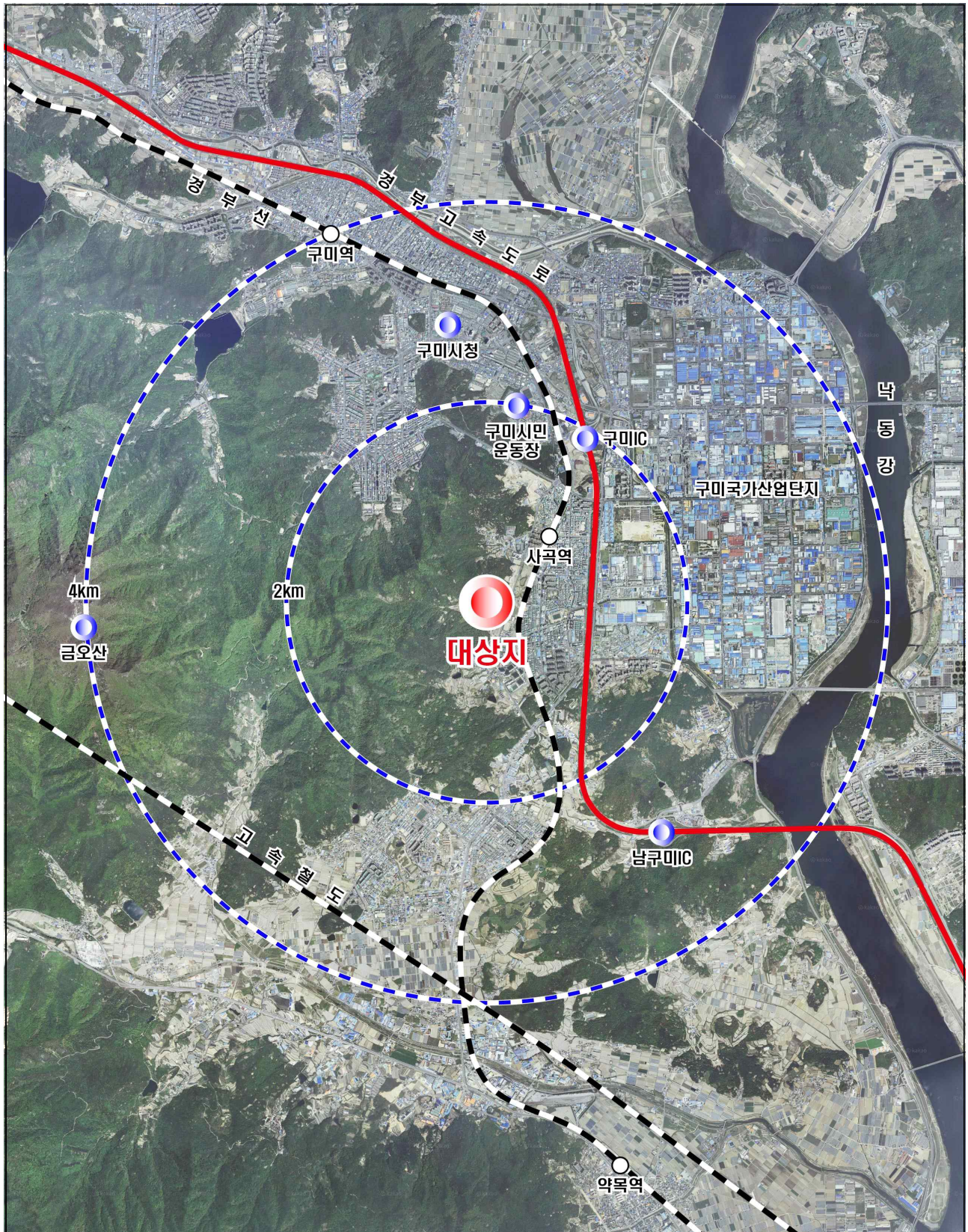
☐ 공간시설(공원) 폐지

- 문화공원(새마을운동 테마공원) 폐지
 - 위 치 : 구미시 상모·사곡동 일원
 - 면 적 : 247,349.6m²

☐ 공공·문화체육시설(문화시설, 연구시설) 신설

- | |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문화시설(신설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위 치 : 상모동 552번지 일원- 면 적 : 230,246.1m²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연구시설(신설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위 치 : 사곡동 746번지 일원- 면 적 : 17,103.5m² |
|---|--|

□ 위 치 도 (문화공원 - 새마을운동 테마공원)



□ 위 성 지 도



[첨 부]

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(안)

요

약

□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권한(경북도 사무위임조례)

- 문화공원 폐지 : 경상북도지사
- 문화시설, 연구시설 신설 : 구미시장

소관별	내 용	수임기관
도시 계획과	3. 도시기반시설(도시·군계획시설) 중 다음 시설에 대한 도시·군 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및 고시 다. 공원(어린이공원, 소공원. 2만㎡미만 규모의 공원으로 한정) 거. 연구시설 너, 문화시설	시장·군수

□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(안)

- 공간시설(문화공원) 폐지 - (경상북도 권한)

■ 공원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①	새마을운동 테마공원	문화 공원	상모, 사곡동 일원	247,349.6	감) 247,349.6	-	경북고 제2013-102 (‘13.03.14)	자연녹지 보전녹지

■ 공원변경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①	새마을운동 테마공원	- 주재공원(문화공원) 폐지 - 공원명 :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- 면적변경 : 감)247,349.6㎡	-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문화공원 폐지 후 문화시설 및 연구시설 신설을 위함

○ 공공·문화체육시설(문화시설) 신설 - (구미시 권한)

■ 문화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⑤	문화시설	문화시설	상모동 552 번지 일원	-	증) 230,246.1	230,246.1	-	자연녹지 보전녹지

■ 문화시설변경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문화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⑤	문화시설	- 문화시설 신설 - 위치 : 상모동 552번지 일원 - 면적 : 230,246.1㎡	-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문화공원 폐지 후 문화시설 신설

○ 공공·문화체육시설(연구시설) 신설 - (구미시 권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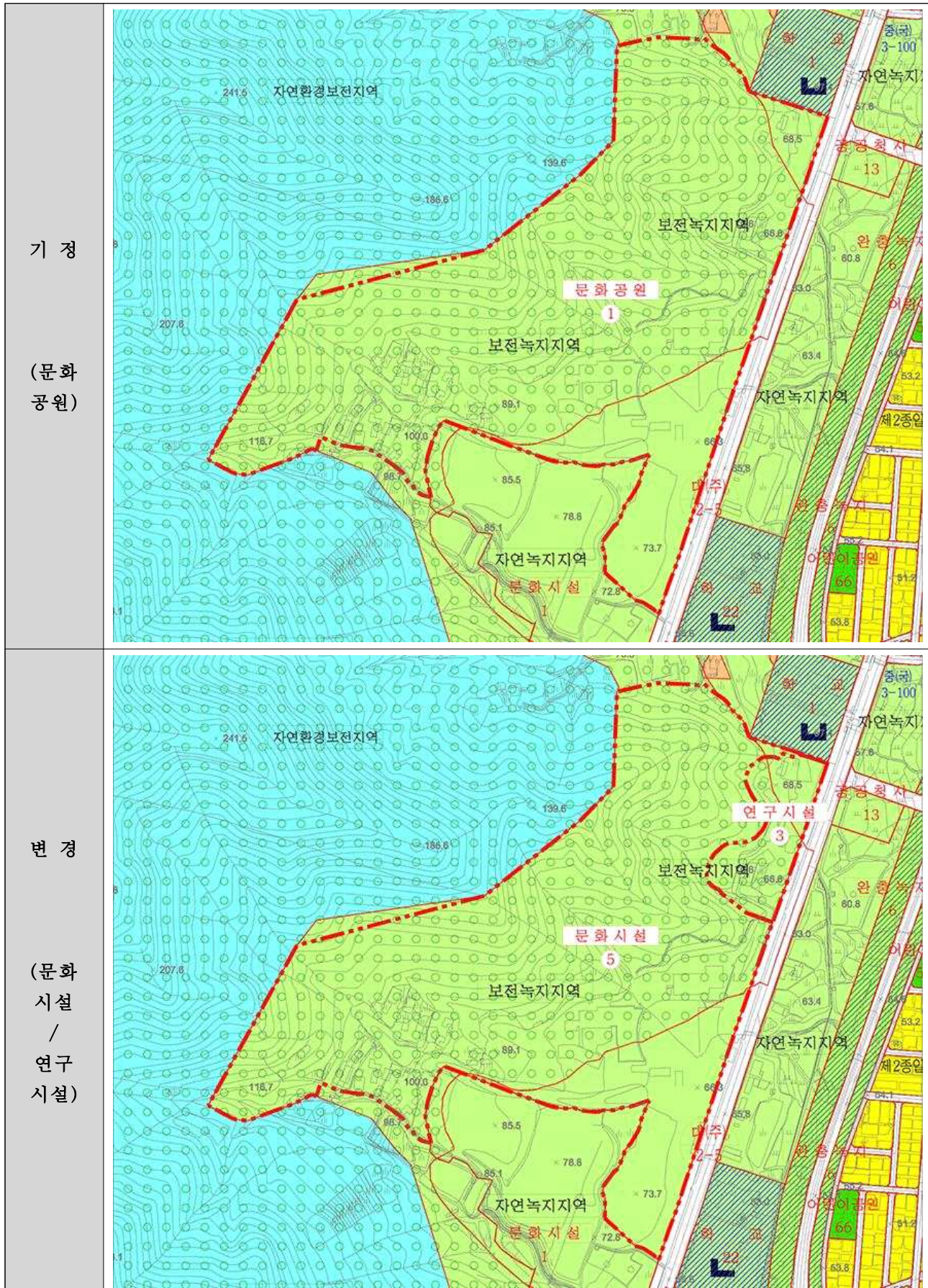
■ 연구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③	연구시설	사곡동 746 번지 일원	-	증) 17,103.5	17,103.5	-	자연녹지 보전녹지

■ 연구시설변경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연구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③	연구시설	- 연구시설 신설 - 위치 : 사곡동 746번지 일원 - 면적 : 17,103.5㎡	-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문화공원 폐지 후 연구시설 신설

<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 도>



관계법령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법 제28조 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

- ⑤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시행령 제22조 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- ⑦ 법 제28조제5항에서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다만,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. 다만,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(도시·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라. 공원 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 공원은 제외한다)

☞ 구미시장이 문화공원(새마을운동 테마공원) 결정(변경:폐지)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구미시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

☞ 문화공원 폐지 후 신설되는 문화시설 및 연구시설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의견청취 대상에 미해당

소 관 부 서		도시계획과
입 안 자	과 장	남 병 국
	담 당	곽 경 철
	담 당 자	이 재 학 (480-5402)